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연월일 : 1994. 12 .

제 출 자 : 서 초 구 정 장

1. 제안사유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증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재원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 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함(안 제3조)
- 라. 구정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함(안 제6조)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4.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서 기금출납공무원은 정소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